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022. 7.

성 북 구
(보건위생과)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 7.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나.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다. 위탁방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에 의해 선정

라. 위탁사무내용

-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등록 관리
- 어린이 급식소 위생,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
- 대상별 방문 및 집합교육(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등)
- 급식관리 매뉴얼,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마. 기존 위탁현황

기관명	소재지	규모	위탁기간(최초 위탁일)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북구 장월로1마길 56	151m ²	2020. 1. 1.~2022. 12. 31. (2011. 4. 6.)

3. 관련 법령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1.28., 2020.12.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개정 2021.12.31.. 조례 제1426호)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설치 및 운영 등)
(제정 2019.4.11. 조례 제1244호)

-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2.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식사지도
 - 4.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컨설팅
 - 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 6.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